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장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1380

발의연월일: 2021. 7. 7.

발 의 자: 장경태·장철민·오영환

윤미향 · 김영호 · 양원영

전용기 · 민형배 · 신동근

정춘숙・유정주・이용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하수급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하도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,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 시 영업정지, 과징금, 공공건설공사하도급 참여제한, 형사처벌 등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며, 최근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 중 붕괴되어 17명의 인명피해가 가져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하도급을 통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.

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경제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이 꾸준히 이어지고, 이를 통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의 공 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현행 최대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 리고, 불법하도급 등 제82조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수준을 도급금액의 30%에서 도급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하며, 처분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할 때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기한 기준을 10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함(안 제29조의3제1항, 제82조제2항 및 제83조제7호).

법률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100분의 30에"를 "2배에"로 한다. 제83조제7호 중 "5년"을 "10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의3(건설공사의 하도급 참	제29조의3(건설공사의 하도급 참
여제한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	여제한) 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	
당하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	
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	
발주하는 건설공사(이하 이 조	
에서 "공공건설공사"라 한다)에	
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여	
야 한다. 이 경우 하도급 참여	
제한 기간은 <u>2년</u> 이내의 범위	<u>3년</u>
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	
에 따른다.	<u>.</u>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제82조(영업정지 등) ① (생 략)	제82조(영업정지 등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	2
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	
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(제5	
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	
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,	
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	
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	

를 말한다)의 영업정지를 명하 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(제3호 ·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 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)의 10 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(제5 호의 경우에는 5억원)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~ 7. (생략)

③ (생략)

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국 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그 건설사업자(제10호 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, 다 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 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)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 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의2, 제3호의 2, 제3호의3, 제4호부터 제8호 까지, 제8호의2,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 다.

<u>2</u> भो
<u> </u>
 1. ~ 7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 제83조(건설업의 등록말소 등) -

- 1. ~ 6. (생 략)
- 7.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 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 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<u>5년</u>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

8. ~ 13. (생 략)

1. ∼ b. (연행과 샅음)
7
<u>10년</u>
8. ~ 13. (현행과 같음)